

## □ 질병관리청 관련 주요 공익침해행위

### ○ 질병관리청 소관 공익신고 대상법률\* 상 공익침해행위

\*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병원체자원법 5개 법률

#### <감염병예방법 상 공익침해행위 예시>

##### ▶ 벌칙 대상행위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 ▶ 행정처분 대상행위

**<예시>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검역법 상 공익침해행위 예시>

##### ▶ 벌칙 대상행위

**<예시>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 행정처분 대상행위

**<예시>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
2.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병원체자원법 상 공익침해행위 예시>

### ▶ 벌칙 대상행위

**<예시>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행정처분 대상행위

**<예시>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또는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접수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주요유형

대상법률	공익침해행위 주요유형
남녀고용평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li> <li>▶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li> <li>▶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li> </ul>
성폭력처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li> <li>▶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등</li> </ul>
성폭력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를 징계·해고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등</li> </ul>
개인정보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li> <li>▶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li> <li>▶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등</li> </ul>
근로기준법 (*21.4.20.부터 공익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li> <li>▶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 위반</li> <li>▶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li> </ul>

※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에게도 신고 가능함